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·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김 중 필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2년 8월 30일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1일

3. 제안이유

수상구조대원의 치료와 보상에 관련된 조례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, 그 밖의 조문을 정비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수상구조대원의 치료와 보상에 대한 근거 조례 명칭 변경(안 제14조)

-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나. 기타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른 용어정비 등

(안 제2조,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개정안은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 물놀이안전 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치료와 보상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, 그 밖에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일부

조문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개정안은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 물놀이안전 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치료와 보상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명칭이 기존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」에서 현행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, 그 밖에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의 정당성이 인정됨.
-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제2조 본문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개정함.
 - 제2조제2호 중 “제1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호에 따른”으로 개정함.
 - 제2조제3호 중 “「수상레저 안전법」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으로서 충청북도지사”를 “「수상레저 안전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내수면으로서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”로 개정함.
 - 제2조제4호 중 “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호에 따라”로, “기타”를 “그 밖”으로 개정함.
 - 제2조제5호 및 제6호 중 “제1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각각 “제1호에 따른”으로 개정함.
 - 제5조 본문 중 “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조제2항에 따라”로 개정함.
 - 제6조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개정함.
 - 제7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개정함.

- 제8조제3항제3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의” 로, “부적합하다고” 를 “적합하지 않다고” 로 개정함.
 - 제9조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호마목 중 “기타” 를 각각 “그 밖에” 로 개정함.
 - 제10조제1항 중 “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제4조에 따라” 로, “제11조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제11조에 따른” 으로 개정함.
 - 제11조제1항 중 “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·선발한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” 를 “제10조에 따라 모집·선발한 수상구조대원에게는” 으로 개정함.
 - 제14조 중 “때의 치료와 보상은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」의 치료·보상의 규정을” 을 “경우에 치료와 보상에 관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21조를” 로 개정함.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 - 입법예고('22. 9. 2. ~ '22. 9. 8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·운영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, 시민수상구조대원이 물놀이안전 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 치료와 보상을 하는 경우 치료·보상에 관한 근거 조례의 명칭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, 그 밖에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른 일부 조문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